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42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4.6.30.자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 나.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현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추진 필요성

-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관련 유해 매체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찾아가는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학부모 성교육
-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지하1, 지상2 일부
- 시설규모 : 1,510.75㎡
- 주요시설 : 교육강의실, 체험관,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4.7.1.~2027.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공모·선정(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6백만원('24년, 국비 86백만원, 시비 220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232백만원, 운영비 57백만원, 사업비 1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연희 (☎ 2133-4128)